고객지원팀장

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(포일동)
T. 02)3470-8200 F. 02)3471-3492

식품 등	시험·검사 의뢰서	처리기간
		일

의뢰인	회 사 명		대 표 자	
	주 소			
	전 화		팩 스	
	핸 드 폰		이 메 일(계산서용)	
시료명 (제품명)				
시험항목	☐ 규격적부 ☐ 일부항목		식품유형/재질	
제조번호(Lot.)		제조일자		유통기한,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
시료정보	☐ 시제품 ☐ 소분제품 ☐ 표시사항 부착 완제품(기준규격: 부적합 시 식약처 통보) ☐ 기타:			
시료보관	☐ 상온 ☐ 냉장 ☐ 냉동		시료량	
의뢰목적 (1개만 선택)	☐ 자가품질위탁검사 ☐ 자가품질위탁검사 확인검사용 ☐ 품목제조가공검사 ☐ 표시검사 ☐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			
	일반참고용	☐ 확인용[개인, 자사, 부적합, 기타( )] ☐ 연구개발용 ☐ 이의신청용 ☐ 제출용[거래처, 식약처, 법원, 기타( )] ☐ 기타( )		
성적서 전달	☐ 우편 ☐ 인편 ☐ 팩스 ☐ 메일 (e-mail:)			
성적서 수량	☐ 국문 ( )부 ☐ 영문 ( )부			
성적서 수령지	☐ 상동 ☐ 그 외:			
참고사항				

[개인정보 활용 동의] 본인은 다음의 목적(시료 접수/검사) 및 범위(국세청-부가세신고, 식약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-기준규격 부적합 시 결과 통보 등)에 대하여 보존기간(관련법에 의한 3년) 동안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의뢰인 (서명)

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귀하

안내사항	
	■ 구비서류 ▸ 사업자등록증 사본(최초 의뢰 또는 내용 변경 시) ▸ 영업허가증(또는 영업등록증) 및 품목제조신고서(자가품질검사 의뢰 시) ■ 시험검사 수수료 완납 후 접수됩니다. ■ 시험검사 완료 후 잔여 시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■ 인정범위 내에서라도 KOLAS 인정마크가 사용되지 않은 성적서는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. ■ Raw Data 요청 시 검사수수료의 20% 비용이 청구됩니다. (단, 수입, 부적합은 제외)
수 수 료	